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자기주식 처분 제한〉

■ 정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176호)

2025. 3.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은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태호의원 등 16인
2. 제 안 일 : 2024. 11. 1.
3. 회 부 일 : 2024. 11.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현행법은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등에 대해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회사가 다른 주주에게 매수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특정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처분하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함은 물론 기존 주주의 의결권 지분율을 희석시키므로 기존 주주의 이익을 해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으며, 회사의 경영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이사회가 임의로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그의 우호적인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처분하게 되면 이는 이사회가 신주를 발행하여 임의로 배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되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결과와 동일하게 된다는 지적 역시 있음.

이에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 처분시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되 신기술의 도입·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신주의 제3자 배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자기주식 처분시 주주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신주 발행 유지청구권 규정 및 불공정한 가액으로 취득한 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도 준용되도록 하고 자기주식처분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을 두어, 주주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 처분시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되 신기술의 도입·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2조제2항 신설).
- 나.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자기주식 처분시 처분가액 등을 주주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342조제3항 신설).
- 다. 신주 발행 유지청구권 규정 및 이사와 통모하여 신주를 불공정한 가액으로 취득한 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자기주식 처분에 준용함(안 제342조제4항 신설).
- 라. 자기주식처분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을 둠(안 제342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신기술의 도입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도록 하고,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에 관한 유지청구권 및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며, 자기주식처분무효의 소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42조 및 안 34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u><신설></u>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현행	개정안
<신설>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기술의 도입·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주 외의 자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회사는 처분하는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처분가액, 처분예정일 및 처분방법을 그 처분예정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424조 및 제424조의 2를 준용한다.
<신설>	제342조의2(자기주식처분무효의 소) ①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자기주식처분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자기주식 처분일로부터 6월 내에 소(訴)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② 제1항의 소에 관하여는 제186조부터 제189조까지,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192조 및 제377조를 준용한다. ③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자기주식처분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자기주식 처분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으며, 이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그 뜻과 3월 이상으로 회사가 정하는 기간내에 해당 주식의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해당 주식의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서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 자기주식처분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회사는 해당 주식의 주주에게 회사가 해당 주식의 처분대가로 취득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전항의 처분대가의 금액이 제3항의 판결확정시의 회사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현저하게

현행	개정안
	<u>부당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 또는 전항의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그 금액의 증감을 명할 수 있다.</u> <u>⑥ 제4항의 경우에는 제339조와 제340조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u>
第342條의2(子會社에 의한 母會社株式의 取得) (생략)	第342條의3(子會社에 의한 母會社株式의 取得) (현행 제342조의2와 같음)
第342條의3(다른 會社의 株式取得) (생략)	第342條의4(다른 會社의 株式取得) (현행 제342조의3과 같음)

□ 현행법은 회사의 자기주식과 관련하여 취득에 관하여는 그 재원과 방법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만 처분에 관하여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원칙적으로 회사는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상장회사의 경우 거래소를 통한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비상장회사의 경우 모든 주주로부터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고, 단주처리나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등 일정한 경우에는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음 (제341조제1항 및 제341조의2 등).¹⁾

1)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로 계산으로

○ 한편,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
회의 결정으로 처분의 상대방 및 처분방법 등을 정할 수 있음
(현행 제342조).²⁾

- 다만,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으로 자기주식의 처분절차를 규율하고 자기주식 처분
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처분목적·상대방 및 예상되는 주식가치
회석효과 등의 사항을 결의하도록 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규정³⁾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황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 2) 「상법」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 ④ 주권
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업자와의 신탁
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2(자기주식의 취득·처분기준) ① 주권
상장법인이 법 제165조의3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신탁계약을 체결 또는 해
지하려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와 신탁계약의 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있으나, 그 처분사유 및 상대방 등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함.⁴⁾

□ 개정안은 자기주식 처분에 관하여 그 상대방 및 처분방법을 제한
하고, 유지청구권 등 불공정한 신주발행에 관한 규정⁵⁾을 준용하며,
자기주식처분무효의 소를 신설함으로써 주주평등의 원칙을 공고히
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신주발행에 준하여 기존 주주의 권리

1. 법 제16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취득 또는 처분
의 목적·금액 및 방법,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법 제16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체결 또는 해지
의 목적·금액, 계약기간,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5-1조(자기주식취득·처분에 관한
이사회결의 사항) 주권상장법인이 영 제17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할 사
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처분의 경우

가. 처분목적 나. 처분 상대방 다. 처분예정금액 라. 주식의 종류 및 수

마. 처분하고자 하는 주식의 가격 바. 처분방법 사. 처분하고자 하는 기간

아. 처분을 위탁할 투자중개업자의 명칭 자. 가격 산정근거 및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차. 처분 상대방 선정사유 카.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4조(자기주식의 취득기간등) ① 주권상장법인은 취득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자
기주식 취득에 관하여 새로운 이사회 결의를 할 수 있으며, 영 제176조의2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결의한 취득예정금액에 미달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취득신고주식수량 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해당 취득기간 만료 후 1월이 경과하여야 새로운
이사회 결의를 할 수 있다. 다만, 보통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취득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였
으나 다시 「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9조(자기주식 처분기간 등) ① 제5-4조제1항 및 제5-8조의 규정은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하
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취득"은 "처분"으로 보며 처분기간은 법 제39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로 한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
사채 발행을 통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5-8조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4)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공시가 임의적인 자사주 보유·처분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견제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금융위원회 2024. 6. 4. 보도자료 “상장
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5) 「상법」 제424조(유지청구권)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
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
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424조의2(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①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
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
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제403조 내지 제406조의 규정은 제1항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이사의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에 영향을 미
치지 아니한다.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경제적인 관점에서 자기주식의 처분과 신주발행은 회사의 총자산 및 주주의 의결권에 미치는 영향이⁶⁾ 동일하고, 특히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는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같으므로⁷⁾, 개정안은 자기주식 처분의 경우에도 신주발행의 대상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제418조제1항·제2항을⁸⁾ 참고하여 처분시의 비율과 그 목적을 규정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신주발행과 유사하게 기존 주주들의 지분 비율 감소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⁹⁾되고, 현 경영진이 자기주식을 우호적인 제3자에게 아무런 제한없이 처분할 경우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인

6) 다만, 자기주식의 처분과 신주발행이 자본금에 미치는 효과의 동일성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림.

7) 송옥렬, 「상법강의」, 홍문사, 2024. p.880·881

8)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①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9)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6. 29. 선고 2005가합8262 판결**은 자기주식이 제3자에게 양도될 경우 이를 양도받은 제3자는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회사의 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기존 주주들에게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오며, 회사가 그 보유의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행위는 그 처분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보유주식의 비율에 따라 주주로서의 회사에 대한 권리나 지위가 변동하는 등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데, 특히 자기주식을 일방적으로 특정 주주들에게만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으로 인해 초래되는 기존주주의 지분 비율의 감소로 인해 신주발행의 경우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므로써 신주발행에서와 마찬가지로 통제를 가할 필요성이 있고, 자기주식의 처분이 신주발행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제를 잠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도 있다는 점을 들어, 회사의 자기주식 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의 무효를 확인하였다.

될 수 있어 그 공정성이 문제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법적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 또한, 개정안은 자기주식 처분에 관하여 명시적인 근거 규정 없이 신주발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면 법적 안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하급심 결정의 입장¹⁰⁾ 등을 고려하여 신주발행절차에서 인정되는 유지청구권 등의 규정을 자기주식 처분절차에 준용하도록 하고, 자기주식처분무효의 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¹¹⁾ 유추적용과 관련된 실무상의 논란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이해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자기주식 처분과 신주발행은 그 효과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구별되는 절차라고 해석하는 하급심 결정¹²⁾¹³⁾와

10) 서울고등법원 2015. 7. 16 자 2015라20503 결정 “「상법」 제342조는 자기주식의 처분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으므로, 위 규정 해석상 정관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회사로 하여금 자기주식 처분에 앞서 주주에게 매수 기회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신주발행의 요건, 절차 및 무효를 다루는 소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었으면서도 자기주식 처분에 관하여는 그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았음에도 주주에게 매수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것은 회사의 자산에 관한 처분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하다. 그리고 여러 차례 상법 개정 과정에서 자기주식 처분에 관하여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반영되지 아니하였는바, 명시적인 근거 규정 없이 자기주식 처분에 관하여 신주발행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거나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함을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할 경우 주식 거래에 관한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11) 준용방식을 취하고 있는 절차에 관한 규정과는 달리, 자기주식 처분 무효의 소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신주발행 무효의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 자체에 무효원인이 있어 주권이 무효인 반면, 자기주식 처분 무효의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과 주권 자체는 유효하지만 양도행위의 효력이 무효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7. 자 2015카합80597 결정 “신주발행의 경우는 주식회사의 자본금과 기존 주주들의 지분비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반면 자기주식 처분의 경우는 이미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처분하는 것으로서 회사의 자본금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거래당사자가 아닌 한 기존 주주들의 지분비율도 변동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주발행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한편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 주식의 성격을 가지고, 이에 따라 전환사채의 발행은 주식회사의 자본금과 기존 주주들의 지분비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주발행과 유사한 측면이 크다), 신주발행은 단체법적 법률행위인 자본거래의 성격을 가지는 것에 비하여 자기주식의 처분은 이미 발행된

자기주식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식 가치 희석은 사실상·경제적 이익의 감소에 불과하다는 판례¹⁴⁾가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과 같이 양 절차를 동일하게 규율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¹⁵⁾

- 참고로, 2006년 10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에서는 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효율적인 재무관리를 저해한다는 재계의 반대로 2008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에서는 준용규정을 삭제한 바 있음.¹⁶⁾

□ 개정안과 관련하여 법무부는 자기주식 처분을 신주발행과 유사하게 규제하는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 실무상 회사는 필요 시 자기주식 처분으로 적대적 M&A를 방어

주식의 매매로서 손익거래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단체법적 법률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자기주식의 처분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를 증가시켜 사실상의 지분비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이익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서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다른 주주들이 일시적으로 실제 보유하는 주식에 비하여 증대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다른 주주들의 위와 같은 이익은 자기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 제36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이하 생략)”

- 13) 이러한 하급심 판례에 대해, 자기주식의 처분과 비교해야 하는 것은 일반적인 신주발행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소각한 다음”에 이루어진 신주발행으로 보아야 한다는 비판도 있음송옥렬, 「상법강의」, 홍문사, 2024. p.881).
- 14)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1413 판결** “자기 주식이 제3자에게 처분되어 기존주주들의 회사에 대한 비례적 이익(의결권 등)이 감소되어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는 것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기존주주들의 회사에 대한 비례적 이익이 증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적·경제적 이익에 불과할 뿐이라 할 것”
- 15) 한편,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자기주식의 제한없는 제3자 처분이 적대적 M&A 시 우리 「상법」상 인정되는 유일한 경영권 방어수단이라는 점 및 긴급한 자금조달 이용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재무적 수단이라는 점을 들어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16)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의원 대표발의, 제2000106호) 검토보고, 2016. 11., p.4

하거나, 신속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

문 의 처
02)6788-5055